

부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8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2008년 12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가.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676호, 2007. 12. 14. 공포·2008. 2. 15.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시장이 추진하여야 할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시장은 평생학습기관의 설치 및 운영,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 부천시평생학습협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 부천시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제14조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할 계획인가?	○ 위탁계획을 검토한 바 없음. (주민생활지원과장)
○ 평생학습실무협의회 기능을 폐지하면서 평생학습협의회 위원도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 12명 이내로 표준안이 내려 왔으며,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한 사안임. (주민생활지원과장)
○ 현장업무에 밝은 분들이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충분히 검토하겠음. (주민생활지원과장)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음

나. 찬성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부천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 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희망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 등)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경비의 보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평생학습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부천교육청 평생학습업무담당국장
2.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
3. 평생학습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계 및 관계 전문가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2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부천시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평생학습 기회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및 학습계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문자해득교육 및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센터의 민간위탁)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센터 운영요원) 센터에는 소장과 직원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운영요원을 둔다.

제16조(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소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에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직원: 4년제 대학에서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평생교육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제17조(센터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6호
의결 년월일	2008. 12. 22. (제148회)

제출년월일 : 2008. 11. 1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676호, 2007. 12. 14. 공포·2008. 2. 15.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추진하여야 할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나. 시장은 평생학습기관의 설치 및 운영,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 다. 부천시평생학습협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부천시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 첨부: 부천시 평생학습 조례

부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부천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 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희망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 등)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경비의 보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평생학습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부천교육청 평생학습업무담당국장

2.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

3. 평생학습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계 및 관계 전문가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
학습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2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부천시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평생학습 기회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및 학습계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문자해득교육 및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센터의 민간위탁)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센터 운영요원) 센터에는 소장과 직원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운영요원을 둔다.

제16조(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소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에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직원: 4년제 대학에서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평생교육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7조(센터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례)

부천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 2003. 04. 10 조례 제1928호

개정 2004. 06. 04 조례 제2025호

개정 2006. 07. 06 조례 제216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천시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②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③시장은 시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2장 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

제3조(평생학습협의회 설치)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07.06>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이 된다.<개정 2006.07.06>

③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시 담당국장, 기관·단체의 장, 시의회 의원, 학계 및 관계전문가,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6.07.06>

④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된다.<신설 2006.07.06>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이 토의에 부치는 안건이 접수 되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항 개정 2006.07.06>

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생학습실무협의회 <장 신설 2006.07.06>

제8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평생학습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평생학습센터 소장이 되며, 위원은 시소속 5급 공무원과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센터 업무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기관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평생학습센터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일비 등)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부천시평생학습센터

제13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① 평생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부천시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소의 설치) 평생학습센터는 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06.07.06>

제15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3. 시민과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학습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강사 관리 전문 은행제 운영
5. 지역인적자원개발과 민주시민의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6.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7.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6조(운영)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요원) 평생학습센터에는 소장 및 직원을 포함 5인 이내를 둔다. <개정 2006.07.06>

제18조(자격기준) 평생학습센터 소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9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거나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1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04.06.04>
2. 직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분야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삭제 2006.07.06>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삭제 2006. 07.06>

제21조(회의 등) <삭제 2006.07.06>

제22조(임기) <삭제 2006.07.06>

제23조(위원장 등의 임무) <삭제 2006.07.06>

제24조(감독) <삭제 2006.07.06>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04.10 조례 제1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04 조례 제2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7.06 조례 제2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